

대한간이식연구학회 회칙

제정

2012년 12월 1일 개정

2017년 10월 13일 개정

2018년 2월 27일 개정

제1장 총칙

제 1 조 (명 칭)

본회는 대한간이식연구학회라 하며, 영문으로는 “The Korean Liver Transplantation Society” 이라고 표시한다.

제 2 조 (목 적)

본회는 간이식에 대한 연구와 진료를 체계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간의 정보를 교환하고,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 3 조 (사 업)
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술 집담회, 강연회, 심포지엄 개최
2. 국내외 관련학술단체와 긴밀한 연락 및 제휴
3.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
4. 회원 간의 친목향상
5.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

제2장 회원

제 4 조

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
가) 정회원

대한의사협회 산하의 각 학회의 정회원으로써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
본회 발전에 이바지할 의학전문의 또는 박사학위(의학박사/일반 Ph.D.) 소지자로서 임원회에서 승인된 자.

나) 준회원

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전공의, 간호사, 코디네이터 및 사회사업가, 또는 생명공학의 계열을 전공하는 석사 이상의 연구자로 임원회에서 승인된 자.

다) 명예회원

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자로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

제 5 조

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
- 가)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, 간행물을 공급받으며 정회원은 임원 및 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.
- 나)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 - 1.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본회에서 주최하는 총회,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
 - 2.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

제3장 임원

제 6 조

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.

회장 1명, 총무 1명, 실행위원 20명 이내, 감사 1명

제 7 조(임 무)

- 회 장: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 본회의 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총 무: 총회, 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.
- 실행위원: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감 사: 본 회의 업무 및 제정상황을 감사한다.

제 8 조(선 출)

- 가)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하며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나) 총무, 실행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다) 감사는 총회에서 전임 총무 혹은 실행위원 중에 호선한다.

제 9 조 (임원회)

- 가)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나)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,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.
- 다) 임원회는 역대 회장 및 실행위원중에서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. 자문위원은 학회발전을 위하여 임원의 자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 10 조(임 기)

- 가) 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, 임기의 시작은 1월 1일로 한다.
- 나) 본 회 총무, 실행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나 중임 할 수 있다.

- 다) 임원의 자격은 만 65 세 만으로 하되 임기중에 65 세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시까지 해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.
- 라)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장 총회

제 11 조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정기 총회는 매년 1 회 실시하며,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.

제 12 조

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.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13 조

총회는 아래사항을 인준한다.

- 가). 회장, 감사의 선출
- 나). 회칙개정
- 다). 사업계획승인
- 라). 기타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 14 조

-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. (출석회원은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.)
- 단.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5장 재정

제 15 조

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, 연회비,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총당한다.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 본회의 재산은 본 연구 회의 활동 및 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6 조

연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단 장기 해외연구 기간동안은 연회비를 면제한다.

제 17 조

본회의 수입지출 결산은 매년 12 월 31 일을 기점으로 한다.

제6장 부칙

제 18 조

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제 19 조

본 회칙은 창립총회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